

# 가능역 하우스토리 리버블리스 입주자 모집공고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분양홍보관 운영 안내

- 「가능역 하우스토리 리버블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분양홍보관 일반관람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가능역 하우스토리 리버블리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분양홍보관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홈페이지(<http://www.ganeung-haustory.com>)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분양홍보관 운영관련 안내

-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진행은 당첨자(동반 1인 포함)만 입장이 원칙이며 분양홍보관 방문 가능 기간(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계약체결 기간 등)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분양홍보관 방문이 불가한 점 양지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오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분양홍보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창구접수 불가, 특별공급 신청을 분양홍보관에서 하시고자 하는 경우 대표번호(☎1533-3261)로 방문 예약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기간에 한하여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사전 예약 후 주택전시관 방문이 가능하며 분양홍보관 내 전시된 모형도 등 관람이 가능합니다.

### 2. 분양홍보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분양홍보관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분양홍보관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분양홍보관 입장 시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방문자 본인이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이거나, 가족 혹은 일상적 접촉이 잦은 지인 중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감염증 확산방지 및 방문인원 현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연락 가능한 연락처 등 인적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분양홍보관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홍보관 내 분양 상담전화(☎1533-3261)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신 후 관련 서류 등 확인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7.2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

으로 인해 해당청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 7년간          |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청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청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9.)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의정부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의정부시는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지역 내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   |   | 일반공급  |                            |
|------------|---|--|--|---|---|---|----------------------------|
|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br>(6개월이상, 예치금)<br>*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br>부지제공자, 장애인,<br>국가유공자 불필요 | 필요<br>(6개월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br>이상인 자 | 필요<br>(6개월이상, 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br>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 24개월이상,<br>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br>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 24개월이상,<br>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br>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 24개월이상,<br>예치금)<br>* 지역별/면적별 예치금<br>이상인 자 | 필요<br>(1순위에 해당하지<br>않는 경우) |
| 세대주 요건     | -   | -  | -  | 필요  | 필요  | 필요  |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  | 적용   | -   | 적용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구분                                       |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YESKEY) | 네이버인증서 | KB모바일인증서 |
|---|----------------|---------------|--------|----------|
|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0              | 0             | 0      | 0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0              | 0             | X      | X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특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분양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분양홍보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aneung-haustory.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청약과열지역인 의정부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청약과열지역 내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

- 전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은 「주택법」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하며, 향후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전매제한기간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 재당첨 제한기간(특별공급 및 1, 2순위 포함)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7년)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청약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접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제한 및 1순위 자격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적용)

※ 전매 금지, 거주 의무, 재당첨 제한 및 가점제 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당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당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 전매된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의심이 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어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부적격자 의심자로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무순위(사후) 및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고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공급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

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지역/기타지역)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1순위   |            | 일반공급 2순위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서류접수   | 계약 체결                       |
|-----|---|--|------------|--|--|--|-----------------------------|
|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해당지역 (의정부시)  | 기타지역 (수도권) |  |  |  |                             |
| 일 정 | 08월 08일(월)  | 08월 09일(화)   | 08월 10일(수) | 08월 11일(목)   | 08월 18일(목)   | 08월 23일(화) ~ 08월 25일(목)  | 08월 29일(월) ~ 08월 31일(수)     |
| 방 법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 인터넷 청약<br>(09:00 ~ 17:30)  | 개별조회<br>(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분양홍보관 방문<br>(10:00 ~ 16:00)  | 분양홍보관 방문<br>(10:00 ~ 17:00) |
| 장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분양홍보관</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능역 하우스토리 리버블리스 분양홍보관</li> <li>-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95, 금오빌딩 2층 (금오동 392-1)</li> </ul>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분양홍보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분양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재생과-8465호(2022.07.28.)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년 07월 29일

■ 공급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15-1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층 2개동 총 121세대 중 일반분양 64세대

[특별공급 32세대(일반[기관추천] 6세대, 다자녀가구 6세대, 신혼부부 12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생애최초 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세대)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br>(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            |         | 기타<br>공용면적<br>(지하주차장등) | 계약<br>면적 | 세대별<br>대지비분 | 총<br>공급<br>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공급<br>세대수 | 최하층<br>우선배정<br>세대수 |
|----------|-------------|----|-----------------|------|-------------------------|------------|---------|------------------------|----------|-------------|----------------|-----------|-----------|----------|-----------|----------|----|-------------|--------------------|
|          |             |    |                 |      | 주거<br>전용면적              | 주거<br>공용면적 | 소계      |                        |          |             |                | 기관<br>추천  | 다자녀<br>가구 | 신혼<br>부부 | 노부모<br>부양 | 생애<br>최초 | 계  |             |                    |
| 민영<br>주택 | 2022-000463 | 01 | 054.9900A       | 54A  | 54.9900                 | 19.1300    | 74.1200 | 44.7600                | 118.8800 | 31.5200     | 26             | 2         | -         | 5        | 2         | 2        | 11 | 15          | 1                  |
|          |             | 02 | 054.9900B       | 54B  | 54.9900                 | 19.0800    | 74.0700 | 44.7600                | 118.8300 | 31.5000     | 13             | 2         | -         | 3        | -         | 2        | 7  | 6           | 1                  |
|          |             | 03 | 059.9900A       | 59A  | 59.9900                 | 20.1500    | 80.1400 | 48.8300                | 128.9700 | 34.0900     | 13             | 2         | 2         | 3        | -         | 2        | 9  | 4           | 1                  |
|          |             | 04 | 059.9900B       | 59B  | 59.9900                 | 20.8200    | 80.8100 | 48.8300                | 129.6400 | 34.3800     | 7              | -         | 3         | 1        | -         | -        | 4  | 3           | -                  |
|          |             | 05 | 067.0400        | 67   | 67.0400                 | 22.0900    | 89.1300 | 54.5700                | 143.7000 | 37.9100     | 2              | -         | -         | -        | -         | -        | -  | 2           | -                  |
|          |             | 06 | 074.9900B       | 74B  | 74.9900                 | 22.9700    | 97.9600 | 61.0500                | 159.0100 | 41.6700     | 3              | -         | 1         | -        | -         | -        | 1  | 2           | 1                  |
|          | <b>합 계</b>  |    |                 |      |                         |            |         |                        |          |             |                | <b>64</b> | 6         | 6        | 12        | 2        | 6  | 32          | 32                 |

-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sup>2</sup>)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대지비분은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허용 오차 내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최하층 우선 배정시 필로티가 있는 타입은 2층 세대를 배정하였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분양홍보관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세대, 원)

| 약식 표기 (타입)       | 공급 세대수 | 층 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 계약 시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 6차(10%)     |             |
|                  |        |        |        |             |             |             | 2022.11.15. |            | 2023.03.15. | 2023.07.14. | 2023.11.15. | 2024.03.15. | 2024.05.15. | 입주 시       |             |             |
| 54A<br>(101동 6호) | 13     | 2층     | 1      | 128,053,200 | 231,646,800 | 359,700,000 | 35,970,000  | 35,970,000 | 35,970,000  | 35,970,000  | 35,970,000  | 35,970,000  | 35,970,000  | 35,970,000 | 107,910,000 |             |
|                  |        | 3층     | 1      | 129,406,000 | 234,094,000 | 363,500,000 | 36,350,000  | 36,350,000 | 36,350,000  | 36,350,000  | 36,350,000  | 36,350,000  | 36,350,000  | 36,350,000 | 36,350,000  | 109,050,000 |
|                  |        | 4층     | 1      | 130,794,400 | 236,605,600 | 367,400,000 | 36,740,000  | 36,740,000 | 36,740,000  | 36,740,000  | 36,740,000  | 36,740,000  | 36,740,000  | 36,740,000 | 36,740,000  | 110,220,000 |
|                  |        | 5층     | 1      | 132,147,200 | 239,052,800 | 371,200,000 | 37,120,000  | 37,120,000 | 37,120,000  | 37,120,000  | 37,120,000  | 37,120,000  | 37,120,000  | 37,120,000 | 37,120,000  | 111,360,000 |
|                  |        | 6층     | 1      | 133,500,000 | 241,500,000 | 375,0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112,500,000 |
|                  |        | 8~9층   | 2      | 134,888,400 | 244,011,600 | 378,900,000 | 37,890,000  | 37,890,000 | 37,890,000  | 37,890,000  | 37,890,000  | 37,890,000  | 37,890,000  | 37,890,000 | 37,890,000  | 113,670,000 |
|                  |        | 10~14층 | 5      | 136,241,200 | 246,458,800 | 382,700,000 | 38,270,000  | 38,270,000 | 38,270,000  | 38,270,000  | 38,270,000  | 38,270,000  | 38,270,000  | 38,270,000 | 38,270,000  | 114,810,000 |
| 54A<br>(101동 7호) | 13     | 3층     | 1      | 128,765,200 | 232,934,800 | 361,700,000 | 36,170,000  | 36,170,000 | 36,170,000  | 36,170,000  | 36,170,000  | 36,170,000  | 36,170,000  | 36,170,000 | 108,510,000 |             |
|                  |        | 4층     | 1      | 130,153,600 | 235,446,400 | 365,600,000 | 36,560,000  | 36,560,000 | 36,560,000  | 36,560,000  | 36,560,000  | 36,560,000  | 36,560,000  | 36,560,000 | 109,680,000 |             |
|                  |        | 5층     | 1      | 131,506,400 | 237,893,600 | 369,400,000 | 36,940,000  | 36,940,000 | 36,940,000  | 36,940,000  | 36,940,000  | 36,940,000  | 36,940,000  | 36,940,000 | 110,820,000 |             |
|                  |        | 6~7층   | 2      | 132,823,600 | 240,276,400 | 373,10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37,310,000  | 111,930,000 |
|                  |        | 8~9층   | 2      | 134,176,400 | 242,723,600 | 376,900,000 | 37,690,000  | 37,690,000 | 37,690,000  | 37,690,000  | 37,690,000  | 37,690,000  | 37,690,000  | 37,690,000 | 37,690,000  | 113,070,000 |
|                  |        | 10~14층 | 5      | 135,529,200 | 245,170,800 | 380,700,000 | 38,070,000  | 38,070,000 | 38,070,000  | 38,070,000  | 38,070,000  | 38,070,000  | 38,070,000  | 38,070,000 | 38,070,000  | 114,210,000 |
|                  |        | 15층    | 1      | 134,888,400 | 244,011,600 | 378,900,000 | 37,890,000  | 37,890,000 | 37,890,000  | 37,890,000  | 37,890,000  | 37,890,000  | 37,890,000  | 37,890,000 | 37,890,000  | 113,670,000 |
| 54B              | 13     | 2층     | 1      | 128,053,200 | 231,646,800 | 359,700,000 | 35,970,000  | 35,970,000 | 35,970,000  | 35,970,000  | 35,970,000  | 35,970,000  | 35,970,000  | 35,970,000 | 107,910,000 |             |
|                  |        | 3층     | 1      | 129,406,000 | 234,094,000 | 363,500,000 | 36,350,000  | 36,350,000 | 36,350,000  | 36,350,000  | 36,350,000  | 36,350,000  | 36,350,000  | 36,350,000 | 109,050,000 |             |
|                  |        | 4층     | 1      | 130,794,400 | 236,605,600 | 367,400,000 | 36,740,000  | 36,740,000 | 36,740,000  | 36,740,000  | 36,740,000  | 36,740,000  | 36,740,000  | 36,740,000 | 110,220,000 |             |
|                  |        | 5층     | 1      | 132,147,200 | 239,052,800 | 371,200,000 | 37,120,000  | 37,120,000 | 37,120,000  | 37,120,000  | 37,120,000  | 37,120,000  | 37,120,000  | 37,120,000 | 111,360,000 |             |
|                  |        | 6~7층   | 2      | 133,500,000 | 241,500,000 | 375,0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37,500,000 | 112,500,000 |             |
|                  |        | 8~9층   | 2      | 134,888,400 | 244,011,600 | 378,900,000 | 37,890,000  | 37,890,000 | 37,890,000  | 37,890,000  | 37,890,000  | 37,890,000  | 37,890,000  | 37,890,000 | 113,670,000 |             |
|                  |        | 10~13층 | 4      | 136,241,200 | 246,458,800 | 382,700,000 | 38,270,000  | 38,270,000 | 38,270,000  | 38,270,000  | 38,270,000  | 38,270,000  | 38,270,000  | 38,270,000 | 38,270,000  | 114,810,000 |
| 59A              | 13     | 14층    | 1      | 135,564,800 | 245,235,200 | 380,800,000 | 38,080,000  | 38,080,000 | 38,080,000  | 38,080,000  | 38,080,000  | 38,080,000  | 38,080,000  | 38,080,000 | 114,240,000 |             |
|                  |        | 2층     | 1      | 139,089,200 | 251,610,800 | 390,700,000 | 39,070,000  | 39,070,000 | 39,070,000  | 39,070,000  | 39,070,000  | 39,070,000  | 39,070,000  | 39,070,000 | 117,210,000 |             |
|                  |        | 3층     | 1      | 140,548,800 | 254,251,200 | 394,800,000 | 39,480,000  | 39,480,000 | 39,480,000  | 39,480,000  | 39,480,000  | 39,480,000  | 39,480,000  | 39,480,000 | 118,440,000 |             |
|                  |        | 4층     | 1      | 142,008,400 | 256,891,600 | 398,900,000 | 39,890,000  | 39,890,000 | 39,890,000  | 39,890,000  | 39,890,000  | 39,890,000  | 39,890,000  | 39,890,000 | 119,670,000 |             |
|                  |        | 5층     | 1      | 143,503,600 | 259,596,400 | 403,100,000 | 40,310,000  | 40,310,000 | 40,310,000  | 40,310,000  | 40,310,000  | 40,310,000  | 40,310,000  | 40,310,000 | 120,930,000 |             |
|                  |        | 6층     | 1      | 144,998,800 | 262,301,200 | 407,300,000 | 40,730,000  | 40,730,000 | 40,730,000  | 40,730,000  | 40,730,000  | 40,730,000  | 40,730,000  | 40,730,000 | 122,190,000 |             |
|                  |        | 8~9층   | 2      | 146,494,000 | 265,006,000 | 411,500,000 | 41,150,000  | 41,150,000 | 41,150,000  | 41,150,000  | 41,150,000  | 41,150,000  | 41,150,000  | 41,150,000 | 123,450,000 |             |
| 59B              | 7      | 10~14층 | 5      | 147,953,600 | 267,646,400 | 415,600,000 | 41,560,000  | 41,560,000 | 41,560,000  | 41,560,000  | 41,560,000  | 41,560,000  | 41,560,000  | 41,560,000 | 124,680,000 |             |
|                  |        | 15층    | 1      | 147,206,000 | 266,294,000 | 413,500,000 | 41,350,000  | 41,350,000 | 41,350,000  | 41,350,000  | 41,350,000  | 41,350,000  | 41,350,000  | 41,350,000 | 124,050,000 |             |
|                  |        | 3층     | 1      | 141,972,800 | 256,827,200 | 398,800,000 | 39,880,000  | 39,880,000 | 39,880,000  | 39,880,000  | 39,880,000  | 39,880,000  | 39,880,000  | 39,880,000 | 119,640,000 |             |
|                  |        | 4층     | 1      | 143,468,000 | 259,532,000 | 403,0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40,300,000 | 120,900,000 |             |
|                  |        | 5층     | 1      | 144,963,200 | 262,236,800 | 407,200,000 | 40,720,000  | 40,720,000 | 40,720,000  | 40,720,000  | 40,720,000  | 40,720,000  | 40,720,000  | 40,720,000 | 122,160,000 |             |
| 67               | 2      | 6~7층   | 2      | 146,458,400 | 264,941,600 | 411,400,000 | 41,140,000  | 41,140,000 | 41,140,000  | 41,140,000  | 41,140,000  | 41,140,000  | 41,140,000  | 41,140,000 | 123,420,000 |             |
|                  |        | 8~9층   | 2      | 147,953,600 | 267,646,400 | 415,600,000 | 41,560,000  | 41,560,000 | 41,560,000  | 41,560,000  | 41,560,000  | 41,560,000  | 41,560,000  | 41,560,000 | 124,680,000 |             |
| 74B              | 3      | 3층     | 1      | 157,102,800 | 284,197,200 | 441,300,000 | 44,130,000  | 44,130,000 | 44,130,000  | 44,130,000  | 44,130,000  | 44,130,000  | 44,130,000  | 44,130,000 | 132,390,000 |             |
|                  |        | 4층     | 1      | 158,776,000 | 287,224,000 | 446,000,000 | 44,600,000  | 44,600,000 | 44,600,000  | 44,600,000  | 44,600,000  | 44,600,000  | 44,600,000  | 44,600,000 | 133,800,000 |             |
|                  |        | 2층     | 1      | 163,973,600 | 296,626,400 | 460,600,000 | 46,060,000  | 46,060,000 | 46,060,000  | 46,060,000  | 46,060,000  | 46,060,000  | 46,060,000  | 46,060,000 | 138,180,000 |             |
|                  |        | 3층     | 1      | 165,682,400 | 299,717,600 | 465,400,000 | 46,540,000  | 46,540,000 | 46,540,000  | 46,540,000  | 46,540,000  | 46,540,000  | 46,540,000  | 46,540,000 | 139,620,000 |             |
|                  |        | 4층     | 1      | 167,426,800 | 302,873,200 | 470,300,000 | 47,030,000  | 47,030,000 | 47,030,000  | 47,030,000  | 47,030,000  | 47,030,000  | 47,030,000  | 47,030,000 | 141,090,000 |             |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택형 표시 안내

|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 054.9900A | 054.9900B | 059.9900A | 059.9900B | 067.0400 | 074.9900B |
|---------------|-----------|-----------|-----------|-----------|----------|-----------|
| 약식표기 (타입)     | 54A       | 54B       | 59A       | 59B       | 67       | 74B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분양홍보관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고분양관리지역 내 건설되는 주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결과에 따른 분양가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분양금액을 책정하였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로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될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이 적용되며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사업주체, 시공사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하여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단, 이자정산일 이전에 입주개시가 될 경우 입주개시월 전 월 이자정산일까지로 합니다. 이하 “이자정산일”이라 한다)까지의 대출이자만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입주 시 정산하기로 하며,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 이후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만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납부 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나, 대출기관 미지정 또는 매수인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에 따른 공급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대출기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5%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택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요,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의 아파트라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으로 구분하여 공급되며, 조합원무상제공품목, 마감재, 분양조건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 분(약식표기)     | 54A           | 54B | 59A | 59B | 67 | 74B | 합 계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등       | -   | -   | 1   | -  | -   | 1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 1   | -  | -   | 1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1   | -   | -  | -   | 1   |
|               | 중소기업 근로자      | -   | 1   | -   | -  | -   | 1   |
|               | 장애인(경기도)      | 2   | -   | -   | -  | -   | 2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경기도(50%)      | -   | -   | 1   | 2  | -   | 4   |
|               | 서울, 인천(50%)   | -   | -   | 1   | 1  | -   | 2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5             | 3   | 3   | 1   | -  | -   | 12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             | -   | -   | -   | -  | -   | 2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2             | 2   | 2   | -   | -  | -   | 6   |
| 합 계           | 11            | 7   | 9   | 4   | -  | 1   | 32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
| 1회 한정/<br>자격요건/<br>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

|                   |   |
|-------------------|---|
| <b>무주택<br/>요건</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ul> </li> </ul> |
|-------------------|---|

| <b>청약자격<br/>요건</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th> <th style="text-align: center;">의정부시 및 경기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8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02㎡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용면적 135㎡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7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모든 면적</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body> </table> | 구 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의정부시 및 경기도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구 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의정부시 및 경기도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       |       |       |              |       |       |       |              |         |       |       |       |         |         |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       |       |       |              |       |       |       |              |         |       |       |       |         |         |       |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3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순번 부여(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천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9호 미적용, 제28조에 따라 일반공급에만 적용되므로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천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청약자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되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자격 검증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경기북부보훈지청 대부의료팀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천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소형·저가주택 소유 시 유주택자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미적용)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9호(2018.5.8.))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기도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단, 경기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기도 거주자가 우선공급(50%)에서 낙첨된 경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때에 지역우선공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거주지역요건 기준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br>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      | 한부모 가족         | 5  |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br>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    |                |    |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br>※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구 분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
|-----------|------------------|-----------------------|
| 신혼부부 소득기준 | 전년도 소득           | 전년도 소득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술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천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                   | 구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 소득<br>기준<br>구분                  | 우선공급<br>(기준소득, 5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208,934원                 | ~7,200,809원                | ~7,326,072원                | ~7,779,825원                | ~8,233,578원                | ~8,687,331원                 |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00%초과~120% 이하    | 6,208,935원~<br>7,450,721원   | 7,200,810원~<br>8,640,971원  | 7,326,073원~<br>8,791,286원  | 7,779,826원~<br>9,335,790원  | 8,233,579원~<br>9,880,294원  | 8,687,332원~<br>10,424,797원  |              |
|                                 | 일반공급<br>(상위소득, 2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40%이하     | 6,208,935원~<br>8,692,508원   | 7,200,810원~<br>10,081,133원 | 7,326,073원~<br>10,256,501원 | 7,779,826원~<br>10,891,755원 | 8,233,579원~<br>11,527,009원 | 8,687,332원~<br>12,162,263원  |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60%이하     | 7,450,722원~<br>9,934,294원   | 8,640,972원~<br>11,521,294원 | 8,791,287원~<br>11,721,715원 | 9,335,791원~<br>12,447,720원 | 9,880,295원~<br>13,173,725원 | 10,424,798원~<br>13,899,730원 |              |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br>(추첨제, 30%) |                     |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40%초과,<br>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8,692,509원~                | 10,081,134원~               | 10,256,502원~               | 10,891,756원~               | 11,527,010원~                | 12,162,264원~ |
|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60%초과,<br>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특별공급 신혼부부 추첨제 신청자 적용)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부동산<br>(건물+토지) | 3억3,100만원<br>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br/>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   |            |  |            |     |                    |               |      |                                  |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구 분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
|-----------|------------------|-----------------------|
| 생애최초 소득기준 | 전년도 소득           | 전년도 소득                |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정부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 구분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소득 기준 구분  | 우선공급(기준소득, 50%)   | 130% 이하                  | ~8,071,614원                 | ~9,361,052원                | ~9,523,894원                | ~10,113,773원                | ~10,703,651원                | ~11,293,530원                |
|           | 일반공급(상위소득, 20%)   | 130% 초과~160% 이하          | 8,071,615원<br>~9,934,294원   | 9,361,053원<br>~11,521,294원 | 9,523,895원<br>~11,721,715원 | 10,113,774원<br>~12,447,720원 | 10,703,652원<br>~13,173,725원 | 11,293,531원<br>~13,899,730원 |
| 추첨제 (30%)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                   | 160%이하                   | ~9,934,294원                 | ~11,521,294원               | ~11,721,715원               | ~12,447,720원                | ~13,173,725원                | ~13,899,730원                |
|           | 1인 가구             |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 9,934,295원~                 | 11,521,295원~               | 11,721,716원~               | 12,447,721원~                | 13,173,726원~                | 13,899,731원~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인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특별공급 생애최초 추첨제 신청자 적용)

|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            |     |                    |               |      |                                  |      |  |                 |
|-------------|--|----------------------------------|---|------------|--|------------|-----|--------------------|---------------|------|----------------------------------|------|--|-----------------|
| 부동산 (건물+토지) | 3억3,100만원 이하   | 건축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건축물 종류                           |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            |     |                    |               |      |                                  |      |  |                 |
| 주 택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            |  |            |     |                    |               |      |                                  |      |  |                 |
|             | 단독주택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            |  |            |     |                    |               |      |                                  |      |  |                 |
| 주택 외        |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            |  |            |     |                    |               |      |                                  |      |  |                 |
| 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   |            |  |            |     |                    |               |      |                                  |      |  |                 |

### Ⅲ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멸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 시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분양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거주구분            |
|------|-----|-------------|--|-----------------|
| 민영주택 | 1순위 | 전용 85㎡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이하: 가점제(75%), 추첨제(25%) 적용 *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 [해당지역] 의정부시 거주자 |
|      |     | 1순위 청약제한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대주가 아닌 자</li> <li>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li> <li>③ 2주택("분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li> <li>④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미만, 지역별/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li> </ol> </li> </ul>   |                 |
|      | 2순위 | 전 주택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li> </ul>  |                 |
|      |     | 2순위 청약제한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과거 해당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li> </ul>   |                 |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

| 구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비고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br>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 0  | 8년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br>(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br>-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br>-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br>※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                     |                    |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 2  | 9년이상 ~ 10년 미만  | 20 |   |
|                     |                    | 1년이상 ~ 2년 미만         | 4  | 10년이상 ~ 11년 미만 | 22 |   |
|                     |                    | 2년이상 ~ 3년 미만         | 6  | 11년이상 ~ 12년 미만 | 24 |   |
|                     |                    | 3년이상 ~ 4년 미만         | 8  | 12년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이상          | 32 |   |
|                     |                    | 7년이상 ~ 8년 미만         | 16 |                |    |   |
| ②<br>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br>- 가족관계증명서<br>-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br>(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br>(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br>※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③<br>입주자 저축<br>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br>(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이상 ~ 2년 미만         | 3  | 10년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이상 ~ 3년 미만         | 4  | 11년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이상 ~ 4년 미만         | 5  | 12년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이상 ~ 5년 미만         | 6  | 13년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이상 ~ 6년 미만         | 7  | 14년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이상 ~ 7년 미만         | 8  | 15년이상          | 17 |   |
|                     |                    | 7년이상 ~ 8년 미만         | 9  |                |    |   |
| 총점                  | 84                 |                      |    |                |    |   |
| 비고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    |                |    |   |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노부모 특별공급 제외)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소유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 구분                           | 내용  |
|------------------------------|---|
|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li> </ul>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
| <p>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ul>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li> </ul>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
|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 <p>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②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p>  |
| <p>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구 분                               | 선 정 방 법   |
|-----------------------------------|---|
| <p><b>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 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ul>  |
| <p><b>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공급 적용</li> <li>*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ul> </li> <li>•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정부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li> </ul> </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
| <p><b>유의사항</b></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분양홍보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분양홍보관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분양홍보관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li> </ul>   |

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가격 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이하인 1호 또는 1주택 (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 2022.08.08.(월)<br>(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br>(사업주체 분양홍보관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사업주체 분양홍보관</li> </ul>   |
| 일반공급 | 1순위                                | 해당지역 (의정부시) | 2022.08.09(화) 09:00~17:30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
|      |                                    | 기타지역 (수도권)  | 2022.08.10(수) 09:00~17:30  |                       |   |
|      | 2순위                                |             | 2022.08.11(목) 09:00~17:30  |                       |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분양홍보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분양홍보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분양홍보관 방문 청약 시 유의 사항

- ※ 분양홍보관 방문 청약 신청은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며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분양홍보관 방문 청약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청약 유형별로 확인하시어 구비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가 미비 할 경우 청약신청이 제한 될 수 있으니 분양홍보관에 서류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분양홍보관 방문 청약 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계약 시 구비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니, 계약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분양홍보관 방문 청약 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 간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③ 네이버인증서 또는 ④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 <p>[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  |
| <p>※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p> <p>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li> </ul> <p>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구 분      | 구비사항               |   |
|----------|--------------------|---|
| 일반<br>공급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br>·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br>·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제3자 대리신청 시<br>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배우자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b>자필 서명한 위임장</b>(‘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b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 일정 및 계약장소

|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 계약체결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2.08.18.(목)</li> <li>• 확인방법</li> <li>-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2.08.23.(화)~2022.08.25.(목)(10:00~16:00)</li> <li>• 장소 : 가능역 하우스토리 리버블리스 분양홍보관 의정부시 동일로 695, 2층 (금오동 392-1)</li> <li>※ 당첨자 외 입장이 불가합니다.</li> <li>※ 일정 및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li> <li>※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자격확인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은 당첨자에 한해 별도 통보 할 예정입니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2.08.29.(월)~2022.08.31.(수)(10:00~17:00)</li> <li>• 장소 : 가능역 하우스토리 리버블리스 분양홍보관 의정부시 동일로 695, 2층 (금오동 392-1)</li> <li>※ 당첨자 외 입장이 불가합니다.</li> <li>※ 일정 및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li> <li>※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 및 계약관련 사항은 당첨자에 한해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li> </ul> |
| 일반공급 | 1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인방법</li> <li>-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2.08.23.(화)~2022.08.25.(목)(10:00~16:00)</li> <li>• 장소 : 가능역 하우스토리 리버블리스 분양홍보관 의정부시 동일로 695, 2층 (금오동 392-1)</li> <li>※ 당첨자 외 입장이 불가합니다.</li> <li>※ 일정 및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li> <li>※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 접수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자격확인 제출 서류 및 제출방법은 당첨자에 한해 별도 통보 할 예정입니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2.08.29.(월)~2022.08.31.(수)(10:00~17:00)</li> <li>• 장소 : 가능역 하우스토리 리버블리스 분양홍보관 의정부시 동일로 695, 2층 (금오동 392-1)</li> <li>※ 당첨자 외 입장이 불가합니다.</li> <li>※ 일정 및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li> <li>※ 자격확인서류 제출방법 및 계약관련 사항은 당첨자에 한해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li> </ul> |
|      | 2순위                                |   |   |   |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평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분양홍보관(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예비입주자) 명단은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당첨자 검수일 및 계약체결 등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에 한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당첨자 검수일 및 추첨, 계약체결 등 자세한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별도 통보예정

- 입니다. (사업주체에서 별도 통보한 일정에 따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해당 특별공급 서류 및 계약서류,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해당 일반공급 서류 및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분양홍보관 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 ※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등·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ganeung-haustory.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
|--------------|------|--|
| 이용기간         |      | 2022.08.18.(목) ~ 2022.08.27.(토) (10일간)   |
| 인터넷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br>-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br>※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 휴대폰<br>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2.08.18.(목) 08:0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V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 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류제출 방법은 방문 제출이 아닌 등기우편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9.)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 ※ 소명자료 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사업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에 필히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봅니다)
- ※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은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과 상이하오며,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일정 및 계약은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 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를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

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 1) 수도권: 1년
- 2)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신청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일반공급 구비서류 (서류접수 기간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br>서류   | ○    |               | ①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본인   | • 분양홍보관 비치  |
|            | ○    |               | ②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br>(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전부공개, 주소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   |
|            | ○    |               | ④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   |
|            | ○    |               | ⑤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br>(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            | ○    |               | ⑦-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배우자 및 세대원  |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br>-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            |      | ○             | ⑧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⑨ 복무확인서          | 본인   |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br>-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br>•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               |
|            | ○    | ⑩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한 경우<br>•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가점제<br>당첨자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br>-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④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 직계비속   |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비속   |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   |
|-------------|---|---|----------------------|----------|---|
|             |   | ○ | 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li> <li>-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li> </ul>   |
|             |   | ○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li> <li>- 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
| 추첨제 당첨자     |   | ○ | ① 1주택 실수요자 주택처분 약약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당첨된 경우(분양홍보관 비치)</li> </ul>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 |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li> </ul>  |
|             | ○ |   | ② 위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li> </ul>   |
|             | ○ |   | ③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li> <li>(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li> </ul>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 |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 해당 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등 "소형 · 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 가격 증명원 등)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
|             | ○ |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li> </ul>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와의 관계,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특별공급 구비서류 (서류접수 기간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서류         | ○    |          | ① 특별공급 신청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양홍보관 비치,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ul>  |
|              | ○    |          | ②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양홍보관 비치</li> </ul>  |
|              | ○    |          | ③ 신분증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li> <li>(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li> </ul> |
|              | ○    |          | ④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li> <li>(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li> </ul>                     |
|              | ○    |          | ⑤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 </ul>  |
|              | ○    |          | ⑥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 </ul>  |
|              | ○    |          |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              |      | ○        | ⑧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li> </ul>   |
|              | ○    |          | ⑨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 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li> </ul>  |
|              | ○    |          | ⑩ 출입국사실증명원      |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 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li> </ul>  |
|              |      | ○        | ⑪ 복무확인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li> <li>-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의 경우 국방부에서 통보한 명단으로 대체</li> </ul>          |
|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    |          | ①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li> <li>- 파견 및 출장명령서</li> </ul>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li> <li>- 현직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 근로자가 아닌경우(*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li> <li>① 비자 발급내역</li> <li>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li>*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li> </ul> |
|                      | ○ | ②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li> <li>*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 부임인정불가</li> </ul>   |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li> <li>•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발급.</li> <li>*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li> </ul>  |
|                      | ○ | ④ 출입국사실증명서                  |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li> </ul>   |
| 일반<br>(기관추천)<br>특별공급 | ○ | ① 특별공급 대상 증명 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br/>(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ul>   |
| 다자녀가구<br>특별공급        | ○ | ①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자<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세대 이상 세대구성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br/>(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 포함"하여 발급)</li> </ul>   |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li> <li>•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                      | ○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li> </ul>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li> <li>•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                      | ○ | 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br>(또는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li>-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br/>(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li> </ul>   |
|                      | ○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br>(또는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홍보관 비치</li> </ul>  |
|                      | ○ | ⑦ 입양관계증명서 또는<br>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br>(또는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의 경우</li> </ul>  |
|                      | ○ | ⑧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li> <li>-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상세"로 발급</li> </ul>  |
|                      | ○ | 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직계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li> <li>-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 노부모부양<br>특별공급        | ○ | ①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홍보관 비치</li> </ul>  |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자<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자<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                      | ○ | ④ 출입국사실증명서                  | 피부양자<br>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시설 및 해외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부양가족 제외</li> <li>-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출생연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                      | ○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 30세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 받고자하는 경우</li> </ul>   |

|              |   |                   |                     |  |
|--------------|---|-------------------|---------------------|--|
|              | ○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자 직계비속           | • 만 18세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고자하는 경우  |
|              | ○ | ⑦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피부양자 직계비속           | • 만 30세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⑧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자 직계비속           |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br>-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br>-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신혼부부<br>특별공급 | ○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을 위하여 '상세' 로 발급  |
|              | ○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br>성년자인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이상)인 세대원 전원 모두 제출<br>(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소득증빙서류          | 본인 및<br>성년자인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br>(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 서류)(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참조)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 | 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 본인<br>(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확인이 가능 해야함)<br>(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              | ○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본인<br>(또는 배우자)      | • 분양홍보관 비치   |
|              | ○ | ⑦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br>(또는 배우자)      | • 입양의 경우   |
|              | ○ | ⑧ 비사업자확인각서        | 본인 및<br>해당자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분양홍보관에 비치)   |
|              | ○ | ⑨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br>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r>•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br>•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생애최초<br>특별공급 | ○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 공고일 현재 혼인관계 확인을 위하여 "상세"로 발급   |
|              | ○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br>성년자인<br>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성년자(만19세이상)인 세대원 전원 모두 제출<br>(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본인                  |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 ○ | ④ 소득 증빙서류         | 본인 및<br>성년자인<br>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br>(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              | ○ | ⑤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세대원<br>(직계존속)       |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br>(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 ○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br>직계비속         |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분이 동일등본상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 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   |
|              | ○ |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⑧ 부동산 소유현황        | 본인 및<br>세대원         |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br>•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br>에는 신청 결과)<br>•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 제3자<br>대리인   | ○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청약자                 | • 용도: 주택 공급신청 위임용, 본인 발급용만 인정  |
|              | ○ | ② 위임장             | 청약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분양홍보관에 비치  |



|            |   |              |     |   |
|------------|---|--------------|-----|---|
| 신청 시 추가 사항 | ○ | ③ 대리인 신분증,인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br>(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분양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서류미비시 접수 불가)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와의 관계,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일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및 자산입증서류**(서류접수 기간 제출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분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소득<br>입증<br>서류   | 일반근로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br>*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br>*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br>②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br>*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 해당 직장/세무서<br>② 해당 직장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br>*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 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또는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br>②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①,② 해당 직장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br>② 재직증명서 (직인날인)<br>*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①,② 해당 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br>*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① 해당 직장                           |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br>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② 세무서                           |
| 자<br>영<br>업<br>자 |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br>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미도래로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인정되며, 국민연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에만 인정<br>② 사업자등록증 사본<br>*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원본) 제출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 ① 소득금액증명원(원본)<br>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미도래로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br>[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br>*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국민연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에만 인정<br>[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br>*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br>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br>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

|                 |  |   |                            |
|-----------------|--|---|----------------------------|
|                 | <b>법인사업자</b>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br>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① 세무서<br>② 등기소             |
|                 | <b>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b>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br>※ 소득신고 미도래로 인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원본)<br>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br>③ “위촉증명서 및 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① 해당 직장/세무서<br>②, ③ 해당직장   |
|                 | <b>국민기초생활 수급자</b>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① 행정복지센터                   |
|                 | <b>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b>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자급여명세서(직인날인)<br>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① 해당 직장<br>② 국민연금관리공단      |
|                 | <b>무직자</b>   |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분양홍보관에 비치)<br>②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 소득사실 없음)  | ① 분양홍보관 비치<br>② 세무서 또는 홈텍스 |
|                 | <b>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b>   | ① 결정세액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br>②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br>-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br>-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br>-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또는 홈텍스               |
| <b>자산 입증 서류</b> | - 「부동산등기법」제109조의2 및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발부받은 세대원별 “부동산 소유 현황”(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결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br>-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 )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                            |

※ 상기 모든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등을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세대의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하며,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제 증명 서류는 원본을(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 발급처                              |
|----------------|---|---|----------------------------------|
| 자격 입증서류        | 일반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 불가<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① 해당 직장/<br>홈텍스/ 세무서<br>② 국민건강보험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br>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br>※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br>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소득세 납부<br>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br>(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br>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① 세무서/홈텍스<br>② 해당 직장             |

|  |                              |  |            |
|--|------------------------------|--|------------|
|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br>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 증명<br>※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불가자에 해당하는 경우<br>- 종합소득세 ·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③ 해당직장/세무서 |
|--|------------------------------|--|------------|

## Ⅵ 계약체결 및 유의사항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계약 기간   | 계약 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2.08.29.(월) ~ 2022.08.31.(수), 10:00 ~ 17:00<br>(* 방문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소 : 가농역 하우스토리 리버블리스 분양홍보관<br/>(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95, 금오빌딩 2층 (금오동 392-1))</li> </ul> |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분양대금 납부계좌 입금 후 입금증 분양홍보관 제출 [계약금 현금수납 불가]
- ※ 지정계약 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분양홍보관 운영 관련 협조요청에 따라 계약체결 일정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계약 구비서류

| 구 분    | 서류유형 |          | 구비서류            | 계약시 구비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본인 계약시 |      | 0        |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0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        | 0    |          | 입금증             | - 계약금 입금 영수증<br>- 분양홍보관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
|        | 0    |          | 신분증             | -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1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br>-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
|        | 0    |          | 인감증명서           | - 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br>-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 절대 불가)  |
|        | 0    |          | 인감도장            |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br>-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        | 0    |          | 인지세(전자수입인지) 입금증 | - 인지세 납부 확인서(수입인지 사이트 : <a href="https://www.e-revenuestamp.or.kr">https://www.e-revenuestamp.or.kr</a> .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사본 첨부)<br>- 분양홍보관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br>- 사업주체에서 별도 안내한 계좌로 '동호수+당첨자명' 입금 |
|        | 0    |          | 자금조달계획서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
|        |      | 0        | 기타 서류           | -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

|                   |   |                   |   |
|-------------------|---|-------------------|---|
| 제3자<br>대리인<br>신청시 | 0 | 신분증<br>(당첨자, 대리인) | - 청약자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1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                   | 0 | 위임장               | - 위임장(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장소에 비치                                       |
|                   | 0 | 인감증명서             | - 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br>- 청약자 본인 인감증명서 |
|                   | 0 | 인감도장              |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29.) 이후 발행분(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는 동·호수 발표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함으로 계약 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국민건강보험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 | 우리은행 | 1005-803-858392 | 의정부가능동15다시14번지일원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외3 |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301호 계약 시 "1010301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 ■ 계약 시 유의사항

- 계약체결 기간 내에 분양홍보관 방문인원이 제한되오니 당첨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당첨자는 분양홍보관 입장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절차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홍보관 내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계약진행 등의 시간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양홍보관에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유지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

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번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으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분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년간 청약 당첨이 제한됨)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당첨자 지위가 우선시 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무효화 됩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관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 1. 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되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시행사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합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까지(단, 이자정산일 이전에 입주개시가 될 경우 입주개시월 전 월 이자정산 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자정산 일”이라 한다) 중도금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입주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 전액을 잔금과 함께 입주자가 완납 해야함) 조건으로 용자 알선을 할 예정이며, 중도금 6차(10%)는 계약자가 자납을 하여야 합니다.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해당 납부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인 거소요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기관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월 이자정산일까지(단, 이자정산일 이전에 입주개시가 될 경우 입주개시월 전 월 이자정산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자정산일"이라 한다)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자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 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Ⅷ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추가선택품목

### ■ 발코니 확장

####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발코니 확장 공사비 | 계약금(20%)  | 잔금(80%)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54A, 54B | 12,500,000 | 2,500,000 | 10,000,000 |
| 59A      | 15,500,000 | 3,100,000 | 12,400,000 |
| 59B, 67  | 15,000,000 | 3,000,000 | 12,000,000 |
| 74B      | 16,000,000 | 3,200,000 | 12,800,000 |

## (2)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하나은행 | 415-910033-51104 | 남광토건(주) |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확인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금납부 :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분양홍보관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분양홍보관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예시 301동 0203호 경우, 입금자명을 '3010203홍길동'으로 기재)
- 발코니 확장비의 잔금 납부일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지정된 납부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3)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공급계약 체결기간 이후 추가, 해약, 변경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실이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연접한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외부환경 요인(우천, 강풍 등)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분양홍보관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 축소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샷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확장을 고려하여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미설치 되어질 수 있으며, 연접 비확장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외부환경 요인(우천, 강풍 등)에 따라 소음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발코니 확장 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각종 설비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선택형(유상, 무상)이 불가하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가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경우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선택안 | 설치 개소 | 설치위치               | 공급금액       | 계약금(20%)  | 잔금(80%)   |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54A, 54B<br>59A, 59B<br>67 | 선택1 | 2대    | 거실+침실1             | 4,510,000  | 902,000   | 3,608,000 |
|                            | 선택2 | 4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8,580,000  | 1,716,000 | 6,864,000 |
| 74B                        | 선택1 | 2대    | 거실+침실1             | 4,510,000  | 902,000   | 3,608,000 |
|                            | 선택2 | 5대    | 거실+침실1+침실2+침실3+침실4 | 10,780,000 | 2,156,000 | 8,624,000 |

(2) 가전제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주택형   | 선택품목 |                   | 공급금액      | 계약금(20%)  | 잔금(80%)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전 주택형 | 주방   | 빌트인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 5,280,000 | 1,056,000 | 4,224,000 |
|       |      | 빌트인 식기세척기         | 1,540,000 | 308,000   | 1,232,000 |
|       |      | 하이브리드 쿡탑(2+1H)    | 440,000   | 88,000    | 352,000   |

(3) 현관 중문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선택 품목          |                | 주택형       | 공급금액      | 계약금(20%)  | 잔금(80%)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현관             | 현관 3연동 중문(화이트) | 54A       | 1,485,000 | 297,000   | 1,188,000 |
|                |                | 59A, 59B  | 1,485,000 | 297,000   | 1,188,000 |
|                | 현관 3연동 중문(브론즈) | 67        | 1,430,000 | 286,000   | 1,144,000 |
|                |                | 74B       |           |           |           |
| 현관 여닫이 중문(화이트) | 54B            | 1,595,000 | 319,000   | 1,276,000 |           |

(4) 거실 특화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선택품목      | 주택형      | 공급금액      | 계약금(20%) | 잔금(80%)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거실특화조명 | 우물천장 간접조명 | 54A, 54B | 1,760,000 | 352,000  | 1,408,000 |
|        |           | 59A      | 2,310,000 | 462,000  | 1,848,000 |
|        |           | 59B, 67  | 1,760,000 | 352,000  | 1,408,000 |
|        |           | 74B      | 1,980,000 | 396,000  | 1,584,000 |



(5) 가구 및 마감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선택 품목                          | 주택형         | 공급금액      | 계약금(20%)  | 잔금(80%)   |
|------------------|--------------------------------|-------------|-----------|-----------|-----------|
|                  |                                |             |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주방               | 엔지니어스톤<br>(주방벽 + 상판)           | 54A, 54B    | 3,410,000 | 682,000   | 2,728,000 |
|                  |                                | 59A         | 2,420,000 | 484,000   | 1,936,000 |
|                  |                                | 59B         | 2,200,000 | 440,000   | 1,760,000 |
|                  |                                | 67          | 3,300,000 | 660,000   | 2,640,000 |
|                  | 엔지니어스톤(주방벽+주방상판+아일랜드상판)        | 74B         | 2,970,000 | 594,000   | 2,376,000 |
|                  | 빌트인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장             | 54A, 54B    | 1,760,000 | 352,000   | 1,408,000 |
|                  |                                | 59A, 59B    |           |           |           |
|                  |                                | 67          |           |           |           |
|                  | 빌트인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장,<br>키 큰 수납장 | 74B         |           |           |           |
|                  |                                | 주방장식장(조명포함) | 54A, 54B  | 1,430,000 | 286,000   |
|                  |                                | 59B         | 1,760,000 | 352,000   | 1,408,000 |
|                  | 아일랜드 하부장+상판(엔지니어스톤)            | 59A         | 880,000   | 176,000   | 704,000   |
| 침실1<br>(드레스룸 특화) | 화장대+드레스룸도어                     | 59A         | 1,485,000 | 297,000   | 1,188,000 |
|                  | 화장대+드레스룸도어+시스템선반               | 59B         | 1,265,000 | 253,000   | 1,012,000 |
|                  |                                | 67          |           |           |           |
|                  |                                | 74B         |           |           |           |

(6)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 옵션계좌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 하나은행 | 415-910033-51104 | 남광토건(주) |

(7) 시스템 에어컨 납부계좌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시스템 에어컨 납부계좌 | 하나은행 | 415-910033-51104 | 남광토건(주) |

(8)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미확장시 시공상의 문제로 선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상의 문제로 계약체결 후 일정시점 이후에 변경이나 해약, 추가계약은 불가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수준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금액은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입주 시 개별납부)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선택품목 설치위치의 단위세대 마감재의 변경 및 미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미시공 설치 및 마감재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판과 벽에 시공되는 엔지니어드스톤 자재특성상 이음부위가 발생하며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분양홍보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 바라며,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제품사양 및 판매가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은 실(거실, 안방 제외)에는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추후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기본제공인 냉매배관(거실, 안방 각 1개소)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 비용을 공제하고 산정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은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우물천장이나 등 기구, 소방시설 등 타 공정과의 간섭으로 인해 본 공사시점에 세대별로 위치가 다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계약은 상기 주택형별 설치위치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과 별도로, 공급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나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종속되어 있어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 계약도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수준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홍보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별도의 에어컨용 배관 연결구가 시공되지 않으며,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매립냉매배관 설치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 환기 디퓨저의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컨트롤러(리모컨)는 무선이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제3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추가선택품목의 공급)제1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및 불박이 가전제품에 대해 입주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유형 및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여야 하나, 본 아파트는 단일제품을 제공하여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적용 될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되는 추가 유상선택품목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 시 동급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IX

## 기타 유의사항

### ■ 일반 공통사항

- 정당 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일체 불가하며,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일 형별(평형) 아파트라도 동과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 시 해당세대의 전망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 분할 및 구획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자리에서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협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주변 현장(소음, 진동, 약취 등)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 또는 법률개정이나 행정명령, 민원, 공사중지 처분(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등), 원자재파동, 문화재발굴, 전염병의 유행 등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준공 및 입주가 지연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닌 단지 외부의 공원 및 공지, 하천, 도로, 완충녹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및 해당 관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GTX-C노선(예정),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예정), 교외선(예정) 및 여타 추진 중에 있는 일체의 교통개선 계획 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변경, 취소, 개통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시설 설치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 각종 영향평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상수도, 전기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관리상 필요 시 타 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가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준공예정일 기준 급수공급 가능 여부는 준공예정일까지 급수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에 의해 임시급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분양사업자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분양홍보관 및 사업계획 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 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등의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경관조명 등 공용시설 조명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2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은 거소요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항제2호의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며, "그 밖의 공용면적" 증감이 있는 변경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본 아파트의 공사 도중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설계와 시공상의 기술적인 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용면적(복도, 계단, 환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상의 증감이 있거나,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용면적(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밖의 공용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이오니 추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는 추후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경미한변경신고 사항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와 관련된 분양 홍보물상 조감도 및 분양홍보관의 모형도 등의 아파트 입면은 실시공사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벽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분양홍보관 및 공급안내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및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모형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각 부유별 치수, 스케일 등 포함),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후 본 사업지 및 사업지 부근의 부지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VR동영상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촬영본으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홍보관

- 본 아파트는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분양홍보관으로 운영되고, 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청약 및 계약 전 분양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형도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분양홍보관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대칭형 세대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자재는 시공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동급 수준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 설치된 외부 창호의 제품사양, 설치 위치 등은 입면계획 및 인허가 결과에 따라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층별 및 라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 설치된 난간대의 크기, 색상, 높이,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 설치되는 수전, 바닥배수구, 입상배관, 전열교환기, 가스미터기, 가스 차단밸브, 환, 각종 점검구 등의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함, 통신단자함, 콘센트, 스위치, 온도조절기 및 배선기구류는 본 공사시 설치 위치, 수량,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는 소방법에 맞춰 시공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위치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폭, 면적 등은 인허가 과정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 발코니의 외벽은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 설치된 천연가공석, 인조대리석, 타일 등은 자재 특성상 색상과 입자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 전시된 이동식 가구 및 가전, 패브릭류, 액자, 조명, 소품 등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분전함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동급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크기, 설치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노출시공 됩니다.
- 세대 통신단자함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동급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크기, 설치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노출시공 됩니다.
- 창호는 본 공사시 창호의 형태, 디자인, 마감, 프레임 사이즈, 위치, 개폐방향, 유리두께/색상, 제품, 제조사, 손잡이 형태 등은 외부 입면계획 및 인허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튼박스는 본 공사 시 공사여건에 따라 마감,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외부여건

- 사업승인상의 미표시된 면적(대지지분)은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생활침해 및 빗길해 등으로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소음측정 및 도로변에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인접동 저층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가 제한될 수 있으며, 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사양, 형태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진출입 공간을 제외한 보행자 전용도로와의 경계부에는 담장 또는 난간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의 경사로, 조정석, 완충녹지의 높이 및 기울기, 식재계획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건축물의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고객센터 차원에서 사업주체는 위 개선변경사항에 대하여 계약자의 선택이나 동의를 묻는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4일 이내에 동의서 회신이 없으면 원활한 사업추진 및 계약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선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단지 주변 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관계가 없으며, 노선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학교 관련 유의사항

- 당 단지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배영초등학교입니다.  
단,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학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향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중)학교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www.goeujb.kr)] 문의
  - 고등학교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satp.goe.go.kr)] 문의

#### ■ 단지 내부 여건

##### [단지배치 및 지상부]

- 단지 내 비상차로에 불라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정화조가 설치되며 배기구 설치로 인한 악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지하 피트를 비롯한 지하층 다수의 위치에 배수를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며 펌프 가동 시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배치CG등에는 비상차량의 정차위치(소방차부서공간)의 표기가 생략된 것으로 실시공사 설치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료·형태·색채·위치·규격·물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BI, CI 및 각종 브랜드 로고 표기는 일부 주동 상단부 벽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상세설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동 주출입구 게이트 디자인은 위치에 따라 석재 돌출치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통신시설, 위성안테나, 경관조명,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다수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일부 고주파 소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주동 저층 외벽부 마감은 2개층 석재 및 뿔칠, 3층 이상은 수성페인트가 기본 마감재입니다.
- 석공사에 쓰이는 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VEIN)는 천연석 특성 또는 제품 간 차이로 인하여 색상 및 무늬가 서로 상이하며, 이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하여 에어매트 설치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해당 자리에는 교육 및 관목 식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주변에 조경수 식재 및 전신주 등으로 인하여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부는 철재난간(또는 생울타리)설치를 원칙으로 하나 공사시 현장여건, 지자체 협의결과에 따라 난간의 설치 구간, 재료,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소방차량 활동공간 및 통로, 공기안전매트 등)에 따라 단지 내 도로 및 조경계획과 차량차단기 등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위치적 특성에 따라 디자인,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동선·기능·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는 입주민 및 인근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도이며,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지하주차장 포함)의 구조(구조시스템 및 기초형식 등) 및 흙막이공법은 시공여건 또는 굴착 후 지반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종류 및 기능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옥탑,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세대의 조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공용조명, 경관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운영/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외부의 마감재, 입면디자인,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추후 인허가청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에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로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까지의 거리는 상이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분리수거 및 보관장소는 수직운반차량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피해 및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상부(101동, 102동)에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며, 전력(전기)용량에 따른 설치용량 및 수신감도등에 따라 위치 및 설치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에 의한 눈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내·외부 조경, 경관조명, 단지홍보용 사인물 단지, 내·외부 조명 및 공용부 조명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조정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 문주 및 경비실, 주동 외벽 및 옥상구조물,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줄눈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이삿짐 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이므로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시 관리업체의 입주규정에 따라 사다리차가 이용 가능한 동이더라도 엘리베이터 이사를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문주,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미술장식품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태양광발전설비, 피리침, 경관조명, 중계기, 환기용 벤츄레이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력(전기)용량에 따른 설치용량 및 수신감도 등에 따라 위치 및 설치개소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홍보관에 전시된 모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일부 동(101동)은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 지하층 일부구간에 중계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문주 및 기타 시설물의 의해 저층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조망간섭)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세대는 차량 출입으로 인한 소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 동별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에 지하 기계/전기실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있어 인접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으며, 환기구의 위치 및 급배기 방향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주동별 소방 급기용 D/A가 1~2개소 설치예정인 필로티 또는 측면 및 후면에 설치되며, 크기, 높이, 위치 등은 시공과정 중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 및 인근 이용주거에 의해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있는 아파트동의 상부층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물(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DA, 자전거 보관소)등은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부대복리시설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설치로 우천시 인접세대에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특성상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랜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발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펌프실의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일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 설비공간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상에 노출된 환기 시설물은 건축물의 특성상 필요한 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형태와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조명시설, 통신시설, 주차관제시설, 환기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지하 계연廻룸의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에 설치되어 소음·먼지·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유효높이와 통로의 유효높이가 지하1층: 2.7m이상, 지하2층: 2.3m이상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 시 각종 배선, 배관, 조명시설, 통신시설, 주차관제시설, 계연廻룸 등이 노출될 수 있어 출입구의 유효높이와 통로의 유효높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실 입주전 및 현장방문 시 반드시 확인하시어 차량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은 건축심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廻룸 및 D.A에 의한 소음, 풍압 등에 의하여 인근세대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인접한 세대는 차량 진·출입에 의한 소음 및 진동,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할 수 없고, 해당동의 이용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상부 및 램프 벽면 구조물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램프, 차로, 주차구획 등 다수의 위치에 개선을 위한 배수판, 출입구 주변 마감재 설치 등으로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차대수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경비실,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 등),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분양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의 재질, 디자인, 수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 이미지 및 분양홍보관의 부대시설 모형, 마감, 시설의 경우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실제 설치되는 수량과 사양 및 기자재의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및 추가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세대는 우수 및 실외기 등의 설비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시설 이용객들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출입문 사양, 크기, 재질, 색채,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등)은 사업주체가 사용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며, 집기 및 비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마감재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인근 세대는 해당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재활용 분리수거시설 등)로 인해 조망권 침해, 분진, 악취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부속시설물의 설치 위치, 개소,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본 공사시 변동 또는 일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물의 냉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와 가감속 차로차선은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수인해야 합니다.

##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확장형의 창호 사양은 발코니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상부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발코니의 천장에 상부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기준층보다 천장고가 낮을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층면세대가 확장형인 경우 인접세대에 면한 발코니 벽부에 측면세대의 단열재가 설치되어, 확장 선택시보다 발코니 실사용면적이 작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는 층별, 위치별로 같은 평형대이나 실사용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습니다.
- 석재 및 인조대리석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 및 단열재로 인해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으며,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벽, 욕실벽, 바닥 및 현관/발코니 바닥, 거실 아트월의 타일/엔지니어드 스톤의 줄눈이 본 공사 시 사이버 주택전시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안방 분함문, 거실 커튼박스, 우물천정의 높이는 스프링클러 배관설치,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높이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개별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쪽으로 냉장고 일부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 (슬라이딩, 여닫이, 픽스 등 유상옵션)의 각종 디테일(프레임, 레일, 유리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시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코킹 시공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샐리,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적절하게 환기가 되지 않으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의 화장실, 다용도실, 세탁실등의 조적조 비내력벽은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철근콘크리트조 옹벽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대피공간, 실외기실,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의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함으로 실외기 2단 설치는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설치공간의 크기는 분양홍보관 및 사업시행인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 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으니, 계약전 분양홍보관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세탁기 위 건조기 2단 쌓기가 불가능 하오니,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발코니 내 빨래건조기 설치 시 사용에 불편함이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일부세대는 보일러 점검 시 불편함이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랍니다.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 됩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 됩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타입별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및 서비스면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대칭형 세대가 있어 거실, 안방, 침실, 부엌의 방향이 상이하게 설치되니 현관 앞에 설치되는 계단 및 E/V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칭형세대의 경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창호개폐방향, 가구의 방향, 수전 및 배수구의 위치 등이 본시공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샤워실, 욕조 하부에는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바닥 단차는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 바닥난방이 적용될 경우 부부욕실은 침실1 난방, 공용욕실은 침실2 난방과 연동되며 별도 제어는 불가합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됩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설치됩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과 무관합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10mm) 있을 수 있으나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본공사 시 세대내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내 설비배관 설치 그리고 욕실천정에 단열재를 부착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정에 설치되는 점검구 및 환풍기 위치는 이동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각실 붙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세대 선택시 가구배치 및 가구량, 마감, 창호 등이 확장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세대 천정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우물천정의 깊이 및 사이즈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등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실시공사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화재 시 외부로의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출입하기 위한 철재문이 설치되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으며, 실외기실의 철재문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대내 실외기실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되고 별도의 드레인이 없으며, 타일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실외기의 냉매배관 연결부위 온도차에 의한 결로수 발생은 하자가 아니며, 실외기 가동 화재예방을 위해 에어컨 사용시 실외기실 창을 개방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을 통해 인접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재질 및 위치는 사업시행인가 도면, 분양홍보관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및 분할은 구조검토결과 및 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형별성능 내역에 제시한 창호 및 단열재는 법적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신발장 가구와 면한 부위(벽, 천장, 바닥면)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창고(일부타입)의 본 공사 시 가구 하드웨어 사양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상화 수납 하부공간의 높이, 깊이 등은 본 공사 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에 디지털도어록, 도어카메라가 설치되며 위치 및 사양,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타일은 공사 시 문양, 컬러 및 타일나누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천연가공석 디딤판은 자재 특성상 색상과 입자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품질향상을 위해 분절시공 됩니다.
- 강마루는 본 공사 시 제조사와 사양의 변경 및 문양, 컬러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시 부주의로 인한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부의 강한 낙하 충격, 높은 열, 물(습기))
- 일괄 소등, 가스차단 스위치는 본 공사 시 동급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센서등은 본 공사 시 동급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인치 월패드, 터치식 조명스위치, 온도조절기, 거실 통합콘센트, 직부등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 변경 및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벽 타일은 본 공사 시 문양, 컬러 및 타일나누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홈 네트워크 시스템(10인치 월패드)은 경비실 및 세대간 통화, 공동현관 출입문 열림, 홈 제어 등의 기능을 갖춘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이 되며, 본공사 시 설치 위치 변경 및 동급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 본 공사 시 가구 악세서리, 하드웨어 사양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설비배관 설치로 인해 상부장의 내부공간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하부장 내 난방용 온수분배기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가스배관 및 가스 밸브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후드장 내 자동식 소화기 설치 위치, 제품,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매입등, 식탁등이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 사양,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주방가구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욕실 및 부부욕실
  - 미끄럼 방지타일로 안전하며, 쾌적한 욕실이 제공됩니다.
  - 본공사 시 습기에 강한 ABS 도어 및 천장재로 마감되고 천장 점검구 및 배기팬이 설치됩니다.
  - 욕실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일나누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품목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 변경 및 동급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연가공석 비누턱은 자재 특성상 색상과 입자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품질향상을 위해 분절시공 됩니다.

- 욕실장
  - 본 공사 시 욕실장의 제조사,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개폐형태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뒷면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산성세제 사용에 따른 거울부위 변색이 일어 날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장 내부에는 드라이기 바스켓 및 콘센트가 설치됩니다.
- 매립형 휴지걸이는 본 공사 시 동급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스피커폰은 경비실, 공동현관, 세대현관 통화, 공동현관, 세대현관 출입문 열림, 비상콜 기능의 스피커폰이 설치되며, 본 공사 시 동급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자식 비데는 본 공사 시 동급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2 또는 침실3 볼박이장(타입별 위치 상이)은 확장시 제공되며, 본 공사 시 가구 하드웨어 사양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공/전시품목]

-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가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의 건립세대, 홍보관의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미확장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 및 식재, 시설물, 드라이에어리어, 부대시설, 실외기실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입니다.
- 분양홍보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저층부와 고층부(외벽의 리브형태 및 지붕모양, 색상 등) 및 부대복리시설의 색상과 형태, 바닥자재의 사양 및 패턴, 수목의 종류, 수량, 규격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부대복리시설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시공시 시공성, 구조계산 등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에 설치되어있는 품목 중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과 확장 시 제공되는 품목 또는 유상옵션, 전시품목이 구분되어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시행인가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 기계전기 설비

-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홍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줄눈 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분양홍보관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는 세대 내 싱크장 하부, 신발장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내부에 유지보수를 위한 상부세대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결정될 수 있고, 부지 내에 설치 시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 실외기실 및 다용도실, 발코니(비확장세대)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 설비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장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계 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작동 소음이 거실 또는 침실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관련법에 의거 세대 주방 천장부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시공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일부 발코니 천장 및 벽체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 주방 및 세대 환기용 장비 및 덕트가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별도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발코니 내부에 상부 및 하부세대용 우수, 배수 입상배관 및 가스배관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공용홀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용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될 수 있고, 현관문이 90도이상 개폐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설계 및 입주자 편의 개선을 위하여, 현관문 규격 및 위치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홀 FIX창 일부는 화재시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됩니다.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형태에 따라 공용홀의 계획에 따라 세대간의 형평성(엘리베이터홀에서 세대출입문까지의 거리, 창호 설치 유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민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공급되는 각종 설비배관(가스등)이 공용홀, 계단실등에 노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X

## 기타 사항

###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및 「주택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이에 따른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 입주예정일 : 2024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보상금,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청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 (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제59조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부대 복리 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경비실,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 등),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지하주차장 등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 구 분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
|---------------|------|---|
| 단열 조치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
| 바닥난방 단열재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
| 고기밀 창호        | 적용   | - 외기직접면한 창의 기밀성능 2등급  |
| 고효율 기자재       | 적용   |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br>-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
| 조명기구          | 적용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용   | -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
| 절수설비          | 적용   |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용   |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단위: 원)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 01222022-101-0002300 호 | 17,573,570,000 |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관리

- (1) “갑”은 “을”의 전매요청시 “갑”의 주택도시시기금 수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대출금융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 없이는 “을”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전매 등 권리승계계약을 하지 않는다.
- (2) “갑”은 “을”에게 분양대금을 환불할 때에는 대출금융기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분양대금 반환금 중 보증부대출금은 위약금(손해배상예정금, 위약벌 포함)에 우선하여 대출금융기관의 보증부대출금 상환에 충당하도록 한다.

### ■ 분양대금채권의 양도 등

- (1) “갑”은 “을”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하며 “갑”은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아 사본 1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대출금융기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일반분양 세대 중 “갑”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분양대금 중 일부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대출금융기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절차이행
  2. 대출금융기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우선수익자(제1순위)로 하는 담보신탁계약 또는 처분신탁계약을 체결

### ■ 보증부대출금의 상환 등

- (1) “갑” 및 “병”은 “갑” 및 “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부담금·분양대금·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한다)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갑” 및 “을”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 (2) “갑”은 본조에 대하여 “을”과 계약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계약서 사본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제출한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 구 분  | 구 조          | 건축/기계/토목         | 전기/통신/소방     |
|------|--------------|------------------|--------------|
| 회사명  | 아석구조엔지니어링(주)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건축 | (주)경민엔지니어링   |
| 감리금액 | 30,000,000원  | 519,379,300원     | 140,000,000원 |

• 상기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구 분               |        | 사업주체                          |                             | 시공회사  |
|-------------------|--------|-------------------------------|-----------------------------|---|
| 사업주체<br>및<br>시공회사 | 상 호    | 의정부가능동15다시14번지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주)삼현종합건설                   | 남광토건 주식회사                                     |
|                   |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태평로214번길 31, 1층(가능동)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17, 602호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비122호<br>(영덕동, UTOWER) |
|                   | 법인등록번호 | 280271-0006320                | 110111-6733524              | 110111-0017411                                |

▣ 분양홍보관 사이버모델하우스 : <http://www.ganeung-haustory.com>

▣ 분양홍보관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695, 금오빌딩 2층 (금오동 392-1)

▣ 분양문의 : 1533-3261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분양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